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34호 2011. 1. 19. (수)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89호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정선군훈령 제39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2
- 정선군훈령 제391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3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3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9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13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정선군공고 제2011-14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19
- 정선군공고 제2011-15호 조례의 제정 및 폐폐청구 주민수 공표..... 21
- 정선군공고 제2011-16호 201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22
- 정선군공고 제2011-20호 종합체육시설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1-25호 예방접종공고..... 26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1. 1. 4.

정선군훈령 제389호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다만, 설계변경 심사는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을 포함한다)이 직전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단, 50억원 이상 공사는 5퍼센트 이상)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1. 1. 7.

정선군훈령 제39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4-1,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1. 1. 7.

정선군훈령 제391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 급 및 직 렬
《본 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정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공보담당	지방행정주사
		감사법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서비스연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경로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가족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자치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교육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방위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정보통신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전산주사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부과담당	지방세무주사
		과표담당	지방세무주사
		징수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계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경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민원봉사과	민원처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적관리담당	지방시설주사
		토지운영담당	지방시설주사
		공간정보담당	지방시설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 급 및 직 렬
	녹색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생활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정화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보건주사
	농업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농촌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농업마케팅담당	지방농업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지방농업주사
		축산지원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축산경영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산림정책과	산림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
		산림조성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경영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마케팅담당	지방행정주사
		문화예술담당	지방행정주사
		생활체육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역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유통소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역협력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 급 및 직 렬
《본 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디자인담당 건축담당 교통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 도로관리담당 재해예방담당 하천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사회지도담당 작물지도담당 특화작목지도담당 농업기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위생담당 건강관리담당 진료담당 방문보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 의기주사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 의기주사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 의기주사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수도시설담당 하수시설담당 시설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 공업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 급 및 직 렬
《읍 면》	정 선 읍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고 한 읍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사 복 읍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 동 읍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화 암 면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 시설주사
	남 면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 시설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 급 및 직 렬
《읍 면》	여 량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 시설주사
	북 평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 시설주사
	임 계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 시설주사
《출장소》	함백출장소	출장소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정선군고시 제2011-3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입산통제 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1. 1. 13.

정 선 군 수

1. 통제기간

가. 봄 철 : 2011. 2. 1 ~ 5. 15(104일간)

나. 가을철 : 2011. 11. 1 ~ 12. 15(45일간)

※ 산불조심 기간 중 전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관내 민유림(ha)	입산통제구역(ha)
	38,154	12,768

나.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지정현황

구분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30	113.4	10	44.2	20	69.2

3. 기타사항

가.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1부.
 2)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권역별 내역)

시군	산명(권역)	읍면리	필지수	구역면적(ha)	비고
정선	25		8,377	12,767.74	
정선	보리산	정선을 덕우리	253	252.61	
정선	철미산	성선을 여탄리	107	282.10	
정선	덕우산	정선을 용탄리	550	580.58	
정선	장갓산	정선을 광하리	391	408.27	
정선	만지산	정선을 굴암리	305	453.73	
정선	도도고지산	정선을 가수리	276	484.22	
정선	지장산	사북읍 사북리	641	880.91	
정선	질운산	신동읍 방제리	18	17.72	
정선	고고산	신동읍 고성리	303	565.98	
정선	운봉산	신동읍 운치리	193	525.00	
정선	각희산	화암면 화암리	612	942.33	
정선	광대산	화암면 건천리	452	462.55	
정선	남진산	화암면 호촌리	332	478.29	
정선	가산	남면 무릉리	503	682.99	
정선	서운산	남면 낙동리	438	883.27	
정선	상원산	여량면 유천리	382	438.83	
정선	노추산	여량면 남곡리	191	548.40	
정선	남산	북평면 장열리	193	303.80	
저온저장시설(1동)	남산	북평면 남평리	245	412.65	
운영장비(1식)	하봉	북평면 나전리	108	196.69	
정선	안산	임계면 봉산리	152	312.00	
정선	단봉산	임계면 낙천리	307	373.94	
정선	전평산	임계면 용산리	446	471.54	
정선	문래산	임계면 물래리, 덕암리	612	1,185.50	
정선	왕치산	임계면 반천리	367	623.84	

2011년 등산로 개방·폐쇄 구분 내역

소재지			등산로			개폐여부	비 고
읍면	리	산 명 (등산로명)	노선번호	구 간	총거리 (km)		
합계		15개산	30개노선		113.4		
정선읍	북실리	조양산	01	성불사입구-정상-신월리	5.8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1	주노선-진성주유소	1.2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2	진성주유소-주노선	1.4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3	진성주유소-주노선	1.1	개방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01	아리랑아파트뒤-정상-굴암리입구	5.3	폐쇄	
정선읍	봉양리	비봉산	01	정선경찰서후문-정상	2.2	개방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	01	만항재-정상-적조암입구	10.1	개방	
고한읍	고한리	못골	01	못골아파트-은대봉	3.0	폐쇄	
사북읍	직전리	노목산	01	폐기물중간처리장-정상	2.9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1-01	강원랜드세탁공장-주노선	2.6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2	노른가리-정상	3.6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3	노나무재-정상	2.3	폐쇄	
화암면	백전리	노목산	03-01	노나무골-주노선	2.1	폐쇄	
화암면	백전리	노목산	03-02	서원기-주노선	4.3	폐쇄	
신동읍	덕천리	백운산	01	점재마을-정상-제장마을	6.7	개방	
화암면	화암리	몰운대	01	화암약수-정상-몰운리	5.4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	화암동굴입구-정상-별문재	6.2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01	문재-주노선	1.1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02	화표동입구-주노선	2.6	폐쇄	
화암면	몰운리	지역산	01	아랫제동입구-정상	3.5	폐쇄	
화암면	몰운리	지역산	01-01	주노선-정상	4.9	폐쇄	
남면	유평리	민동산	01	증산초교-정상-불암사	10.1	개방	
남면	유평리	민동산	01-01	주노선-고병골	2.3	개방	
남면	무릉리	민동산	01-02	능전-정상	3.3	개방	
남면	문곡리	벽암산	01	용궁낙시터-정상	1.5	폐쇄	
남면	낙동리	백이산	01	개미마을-정상	2.8	폐쇄	
남면	광덕리	백이산	02	역발-정상	3.6	폐쇄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01	문곡다리주차장-정상-고양리노인정	6.7	폐쇄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01-01	주노선-놀탑-주노선	1.5	폐쇄	
임계면	봉산리	장찬성	01	봉산1리-정상-송계솔밭	3.3	폐쇄	

정선군공고 제2011-13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7.

정 선 군 수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수식재료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는 등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식재료 중 각호 해당되는 것을 수정 또는 신설한다(안 제2조)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제7조 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제7조 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사. 우수식재료 중 정보화 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한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식품 (신설)
- 위원회의 구성 중 정선군 소재 교원단체를 삭제하고 정선군 소재 학교 영양사 단체를 영양(교)사 단체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185,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 임 1.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각 호” 를 “각 목” 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 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물
- 마.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바.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아. 정보화 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 제조·가공식품
- 자. 기타 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제7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양사” 를 “영양(교)사”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25>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다. 찐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

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4)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5) 내용량
-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한다.
-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로 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1) 쇠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 2등급 이상
- (3) 닭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 (4) 계란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 이상
- (5)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3. 수산물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동법 제9조에 따른 "지리

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 특산물"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6)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9)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1-14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동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11. 1. 7.

정 선 군 수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시군명	19세이상 주민수			선거권이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계	내국인	등록 외국인	계	내국인	등록 외국인	계	내국인	등록 외국인
정선군	34,614	34,602	12	213	213	0	34,401	34,389	12

※ 2010. 12. 31현재 기준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자치단체장(군수) : 5,160명

(단위 : 명)

선거구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정선군수	34,401	5,160	
정 선 읍	9,339	344	
고 한 읍	4,790	344	
사 북 읍	4,725	344	
신 동 읍	3,482	344	
화 암 면	1,495	224	
남 면	2,874	344	
여 량 면	2,004	300	
북 평 면	2,354	344	
임 계 면	3,338	344	

※ 서명인수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3개 읍면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방의회의원 : 가선거구 3,706명, 나선거구 3,174명

(단위 : 명)

읍 면 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권자 총수	비 고
가선거구	18,530	3,706	
정 선 읍	9339	185	
화 암 면	1495	185	
여 량 면	2004	185	
북 평 면	2354	185	
임 계 면	3338	185	
나선거구	15,871	3,174	
고 한 읍	4,790	159	
사 북 읍	4,725	159	
신 동 읍	3,482	159	
남 면	2,874	159	

※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2개 읍면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정선군공고 제2011-15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1. 7.

정 선 군 수

(단위 : 명)

읍 면 별	총 주민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
계	41,045	34,619	213	34,406

※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민 5명,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12명 포함

※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수(1/35) : 983명

정선군공고 제2011-16호

2011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정선군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1. 7.

정 선 군 수

(단위 : 명)

구 분	계	내국인	조례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비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34,627	34,602	20	5	

※ 내국인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정선군공고 제2011-20호

종합체육시설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정선군종합체육시설 주요시설에 대한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사건사고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정선군청 관광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0.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정선군종합체육시설 CCTV 설치
2. 시 행 청 : 정 선 군
3. 공 고 기 간 : 2011. 01. 10 ~ 2011. 01. 30 (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11. 01. 10 ~ 2011. 01. 30 (20일간)
5. 공 고 방 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www.jeongseon.go.kr) 및 군보
6. 근 거 법 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7. 설치장소 예정지

설치위치		설치대수
계		42대
주경기장	1층 주출입구 1대, 전기실 1대, 기계실 1대 2층 VIP출입구 1대, 보조출입구 2대 3층캐노피상부 3대	9대
실내체육관	1층 주출입구 1대, 보조출입구 2대 2층 홀 1대, 좌우복도 2대 3층 홀 1대, 휴게공간 1대, 좌우통로 4대	12대
테니스장	1층 주출입구 1대 2층 숙소복도 1대, 휴게실 1대	3대

공도장	1층 주출입구 1대 2층 사무실 1대, 사대방향 1대	3대
기타 옥외	주출입구 만남의광장 1대, 주경기장둘레 5대 보조경기장 1대, 문화재광장 1대, 잔디광장 2대 주차장-1 2대, 주차장-2 2대	15대

8.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종합운동장 출입자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관광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출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우)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봉양리267)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o 팩스 : (☎ 033-560-2593)

마.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정선군종합체육시설 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정선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임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5호

예 방 접 종 공 고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거 2011년 시행할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1. 12.

정 선 군 수

접종명	대 상	접종일시	장 소	수 수 료	비 고
비시지 (BCG)	생후4주이내	매주목요일	보건소	무료	오전접종 (10:00~12:00)
		매주수요일	고한사북,신동,임계지소		
소아마비	생후2,4,6개월 (3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오전접종 (09:00~12:00)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남면,여량,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디피에이피	생후2,4,6개월 (3회) 생후18개월 (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엠엠알 (홍역,볼거리, 풍진)	생후12~15개월 (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수두	생후12~15개월 (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B형간염	0~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소인:1,960원 대인:3,430원	영유아 오전접종 (09:00~12:00)
일본뇌염	만1~12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티디	만11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동면,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장티프스	만5~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무료	식품접객업소종사 자,불완전급수지 역주민대상 접종
유행성 출혈열	중학생이상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무료	농업,임업종사자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대상접종
독감	만3세이상주민	매년10~12월	보건소 보건지소	미정	매년수수료변경

※ 지참물 : 의료보험카드, 모자보건수첩